



‘직인생략’

교육 제67호

2021. 7. 20.

수 신 : 담임목사(전국교회)

제 목 : 인터콥선교회(최바울)에 대한 총회 결의사항 안내의 건

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 지난 제115년차 교단총회(2021.05.26.)에서는 이단사이비대책 특별법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인터콥선교회(최바울)에 대해 ‘경계집단’으로 규정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교회에서는 첨부된 경과보고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신 후에 성도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인터콥선교회(최바울 선교사)관련 경과보고 1부. 끝.



총 회 장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지 임
형 석
응 응

인터콥선교회(최바울 선교사) 관련 경과보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1. 서론

'인터콥 선교회'에 대한 교단 안팎의 문제제기 및 이와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지속됨에 따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본 위원회)에서는 설립자이며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의 신학에 대하여 각종 저서와 강연들을 바탕으로 연구·조사하였고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거쳐 아래와 같이 본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경과보고

- 2013 영적전쟁론, 귀신론, 신사도운동의심 연구대상으로 지정(분류번호 SU08182013)
2013. 05 이단사이비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발행
2014. 07. 25 경기동지방회 및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문의한 인터콥선교회의 이단성에 관한 교단의 입장(공문)
- 요약1. 인터콥선교회는 이단이라 할 수 없지만 일정기간 '예의주시'하거나 적극 '권고' 해야 하는 단체이다. '예의주시'라 함은 이단으로 볼 수 없으나 교회와 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주시해야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요약2. 인터콥선교회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은 5가지이다.
- 첫째, 배뢰아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 둘째, 무속신앙에 근거한 영적전쟁론에 빠져있다.
 - 셋째,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 해당하는 백투 예루살렘을 강조한다.
 - 넷째, 신사도개혁운동 단체들과 교류하고 있다.
 - 다섯째, 한국교회를 옛부대로 암시하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요약3. 결론적으로 위의 2번 항목 5가지를 강조하거나 위반하지 않는다면 인터콥선교회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단 내 개교회에서 인터콥선교회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교단 이대위의 입장인 '예의주시'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2018. 04. 12 최바울 선교사 질의응답 진행
2018. 05. 인터콥 선교회에 대하여 1년간 예의주시 결의(제112년차 총회)
2019. 04. 10 최바울 선교사 질의응답 진행
2019. 05. 인터콥 선교회에 대하여 1년간 예의주시 재결의(제113년차 총회)
(구체적인 정오표 작성 및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계획서 제출요구)
2020. 02. 18 인터콥선교회 측의 입장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2020. 03. 05 최바울 선교사 측 답변서 도착
2020. 05. 인터콥 선교회에 대하여 1년간 예의주시 입장 연장 결의(제114년차 총회)
(뚜렷한 개선의 정황을 입증하지 못할 시에 제115차 총회에 '경계대상' 요청)
2021. 01. 28 인터콥 선교회가 뚜렷한 개선의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고 반기독교적인 행위로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제115년차 총회에 '경계대상'으로 판정할 것을 보고하기로 결의
2021. 05. 26 인터콥 선교회에 대하여 '경계대상'으로 결의(제115년차 총회)